

HOT ISSUE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1996. 8. 2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서초구 방배 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전화 : 521-5364 팩스 : 584-7701

차례

I. 들어가며.....	2
II.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인권의 실제.....	3
1.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현황.....	3
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여성장애인의 차별 양상.....	5
가. 고용	
나. 제한된 직종	
다. 가족	
라. 가정폭력	
마. 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이용한 성폭행	
바. 육아 및 경제적 자립	
III. 여성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과 북경세계여성대회	7
IV.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	9
1.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9
2. 여성장애인에 관한 편견의 심화.....	10
VI.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활동상황.....	10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 활동 보고.....	10
VII. 나오면서.....	11

I. 들어가며

지난해 북경세계여성대회 비정부포럼에 참여하면서 발표한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 해결 대안'의 내용을 오늘 포럼에서도 동일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동아시아 포럼에 앞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다.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한 1년 전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나이로비 여성 발전 전략의 제 296조항(특별 관심 분야)에 명시된 여성장애인 권리 회복을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여성장애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87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한국 사회는 여성 또는 장애인 차별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과 장애인 등 차별 받는 계층의 인식문제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문제에 관한 정책이나 인식논의에 있어서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아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 2차 동아시아 여성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한다.

첫째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한국 정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 널리 알린다.

둘째 여성장애인문제 해결은 여성문제의 해결의 귀결점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여성 관련 정책 안에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분명히 명시하고, 여성 정책 및 여성 관련 각종 법령 등에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가능한 구체적이고 올바르게 알려내며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모든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여성장애인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킨다.

넷째 특별히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장애인문제가 여성장애인 혹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전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임을 부각시킨다.

II.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인권의 실재

1.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현황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 사회 이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여성 차별의 핵심적인 이유라면, 인생에 좌절을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불교의 윤회설은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가지 핵심적인 차별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은 ‘차별이 낡은 차별’ 속에서 더한(+) 것이 아닌 곱해진(×)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살고 있다.

또한 오랜 군사 정권 속에서 적절한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 기조가 가져온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은 여성장애인에 관한 정책적 차별을 심화시켰으며, 최근 들어선 소위 문민정부는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신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정운영 기조를 갖고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양태는 가족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혹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해 1백21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의 자료집/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1995년) 적어도 20%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초·중등의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는 장애 때문에 등하교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0%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여성장애인이 적어도 30% 이상으로 집계됐으며(부모나 보호자의 의지 부족), 친구들이 놀려대거나, 부끄러워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더러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한편 교육 받지 못한 여성장애인은 고용의 기회에서도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20%이하였으며, 직업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대부분 생산직에다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로 인해 아예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결혼 전의 가족 관계 속에서 당한 상처를 다시 입고 싶지 않아서, 또는 결혼 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등으로 답변이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 이외에는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수치를 비롯하여 인권 실태가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한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추정치만이 밝혀진 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약 95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여성장애인은 44%인 4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계(민간단체)에서는 정부가 규정하는 장애인 범주보다 확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각 국가 국민의 10%가 장애인 수(한국 : 450만여명)라는 기준에 따라 그 반수(250명)를 한국 사회 여성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장애인 중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문제가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와 사회는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이러한 국가적 노력이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하다. 따라서 장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하루 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수립과 사회의 편견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여성장애인 차별 양태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여성장애인의 차별 양태이다. 고용, 교육, 육아, 경제적 자립, 가족, 결혼, 성폭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인데, 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이 사례들이 여성장애인문제의 전반을 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밝힌다.

가. 고용 차별

J(35세)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야간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다녔다. 이 때 친구들과 산행을 하다가 발을 헛디뎈 채추를 다치게 되었고, 왼쪽 다리에 마

비가 왔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노력 끝에 목발을 이용하여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멈추었던 학업을 계속하여 '2급 준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교사 임용고시를 보아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시험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이유는 초등교육의 특성상(체육시간 등) 장애인을 교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J씨는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방송출연을 하는 등 5개월이 넘는 투쟁을 했으나 너무나 두터운 사회적 인식의 벽 앞에서 물리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이 해왔던 예전의 적정생활로 돌아가기 있다.

나. 교육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두살 때 1급 장애를 갖게 된 H씨(29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업고 등 학교를 해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기까지 다녔던, 초등학교 2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 학력이다. 자신의 부모님은 가난했던 지난 시절, 낯지도 않을 자신의 장애 치료와 6형제의 뒷바라지를 위해 밤낮으로 품팔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문제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녀는 할 일 없이 그럭저럭 20여년을 집안에서만 훌쩍 넘겨버린 것이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은 다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다. 학교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그녀에게 어머니는 “학교는 제쳐두고라도 나나 너 아버지는 너 병 낫는 데만 신경썼다. 더구나 곧 죽어버릴 것 같아서 학교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었지. 이렇게 고질병인지 알았다면 들쳐업고라도 학교에 가는 것인데. 그 놈의 의사들이 고질병이라는 말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H씨는 뒷말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 앞에서 결코 화를 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H씨는 중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중대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워두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다. 가족

Y(32)씨는 96년, 올해가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친정아버지 회갑잔치날 그녀는 휠체어를 탄 남편(척수장애)과 함께 친정에 와서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차라리 약 먹고 함께 죽자”며 반대하던 부모님이 “우리 집의 귀한 사위가 어려운 걸음을 해주었다”며 반기는 모습을 보며 Y씨는 19살 때 뇌수술 후유증으로 반신불수라는 장애를 입게 된 이후의 가족들과 치렀던 수많은 전쟁(?)을 생각했다. 처음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Y씨가 무엇보다도 참기 힘들었던 것은 여성의 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Y씨는 먼저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열심히 연습하였다. 그 후 화장실을 혼자서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목발을 짚으며 왼쪽팔은 쓰지 못함), 그러면서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자 중증장애인 시설에 나가기 시작했다. 1년여가 지나자 그녀의 부모님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매일 매일 교통비 축내가며 쫓아다닌다며 “병신끼리 어울리다가 무슨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칠거야. 앞으로 다시는 나가지마!” 하며 교통비 일체를 주지 않았다. 그 후 Y씨는 전국방방곡곡에 있는 장애인에게 편지로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다. 오가는 편지가 늘어나자 부모님은 다시 제동을 걸고 편지까지도 차단했다. 이 때 부모님과과의 마찰로 인해 탈출을 결심하는데 그것이 바로 22살에 생각한 결혼이었다. 12살 연상인, 그것도 휠체어를 탄 노총각이었는데, 부모님은 “별 미친 년 다 보겠다”며 아예 들은 척도 안했다.

Y씨는 입으로 행주를 짜는 연습, 가사연습 등을 열심히 한 뒤 야간도주를 감행하여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워낙 가난했던 남편인지라 둘이는 시로가 시로를 의지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우애있는 부부의 모습을 본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은 그녀의 결혼을 인정한 것이다. 아니 장애를 가진 남편과 그녀를 '인간'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 가정폭력

올해 34살의 청각장애여성 G씨는 1년전까지 이어지왔던 악몽을 아직도 잊지 못해 잠을 설친다. 그녀가 보낸 4년간의 결혼생활이 남편으로부터의 구타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에 15살에 중이염을 앓아 중도에 청각을 잃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배려 덕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이 지냈던 그녀는 그림도 그리고 공예도 배우면서 30살까지 지냈다. 그러다 친구 아기 백일 날 찾아간 곳에서 경중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남성을 만났고 그의 끈질긴 구애에 설복당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에게 이혼경력과 딸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형제들은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사람만 성실하면 되리라'는 생각에 결혼을 강행한 그녀. 그 후 두 아이를 낳고 4년간 5번이나 남편의 구타를 피해 도망다니게 되었다. 결혼하자마자 안들리는 그녀의 장애를 미끼로 오가는 욕설, 집기 던지기, 발길질. 이렇게 맞고 지내는 그녀에게 동네사람들은 도망갈 것을 부추기까지 했다. 그녀의 가출은 둘째아이를 낳고 행해졌다. 병원에서 고생 끝에 낳은 아이를 보지도 못한 채 남편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렸고 그 곳에서는 아이를 외국에 입양시켜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에 몸서리친 그녀는 산후조리도 할 새 없이 95년 8월 첫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가출을 시도했다. 남편이 찾아올까봐 친정에 연락도 안하고 길거리에서 결인생활을 한 지 1달 정도, 그동안 그녀는 여성 폭력 상담소 등을 여러곳 찾아다녔지만 청각장애라고 어떤 단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시에 청원서를 넣어 겨우 받아준 자매복지관 내 '쉼터'에서 1년째 살고 있는 그녀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곧 떠나야 한다. 그녀는 지금 고아원을 통해 입양되어간 둘째아이를 그리며, 자신과 4살박이 아이를 받아줄 곳을 찾고 있다.

마. 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이용한 성폭행

뇌성마비 장애인인 K양(지체 1급,휠체어 이용)은 부모와 함께 살다가 등하교 문제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갔다. 그 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자원활동을 하는 한 남자를 알게되었다. J양은 그를 믿었으나 J양이 자고 있을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1년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가해자는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고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시설을 나왔다. 그러나 갈 곳이 없어 다시 시설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남자와의 관계가 소문이 나 곱지않은 시선이 건디기 힘들어 다시 나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바. 육아 및 경제적 자립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고 그 후유증으로 장애(1급 장애)를 갖게 된 Y씨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고, 비장애인과 결혼도 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면서 장애의 차별을 느끼기 시

작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가장 먼저 찾아 온 문제는 가난이었다. 더구나 Y씨의 경우는 어린 딸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친구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강사 자리를 간신히 얻게 되었다. 그런데 Y씨가 강사로 있는 미술학원의 학생들이 자주 줄어들었다. 이유는 장애인이 가르치는 학원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Y씨는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Y씨가 일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직장 없었다. 결국 Y씨는 유원지에 나가 오징어 등을 팔거나, 제봉틀로 장의옷을 만드는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Ⅲ. 여성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과 북경세계여성대회

UN을 비롯한 국제적인 기구들은 여성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문제제기와 아울러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모든 여성문제 혹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례로 ▲ 1980년 UN에서 개최한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에서 “여성장애인이 품위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고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에는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명백하게 고려한 것을 요청 제안하였으며 또한 ▲ 198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특별관심분야 제 296조항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명시함으로써 여성장애인문제를 세계적으로 환기시켰다. 그리고 ▲ 1990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DPI세계회의에서도 여성장애인문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이루어졌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20개 항목의 특별한 조건 마련을 각 국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북경세계여성회의의 결과인 선언문이나 행동강령 어디에도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북경세계여성 민간기구(NGO)포럼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정부기구(GO)의 회의 결과는 기대 수준 이하였던 것이다.

북경 세계 여성대회 선언문의 요지(제 4차 세계여성회의 보고서/정무제2장관/1995)는 “85년 채택한 나이로비 여성 발전 전략의 국가적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세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그나마 북경 세계 여성대회 비정부(NGO) 포럼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는 주제로 열림과 동시에 특히 여성장애인에 관한 주제(북경여성대회 보고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1995)를 갖고 토론을 벌여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포럼에 참가한 2백여명의 여성장애인은 포럼장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부재에 대해 연일 정거시위를 벌여 그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여성장애인들은 비정부포럼 기간 동안 권리로서 “비정부기구 포럼장의 편의시설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포럼장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었으며 휠체어 대여도 돌려 받기 서명운동을 펼치기도하여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여성장애인의 활동이나 비정부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에 관해서 선언문이나 ‘행동강령’에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의 특별관심분야에서 한 조항을 차지한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10년 후인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언급되지 않는 등 오히려 정부간 회의가 내는 결과물이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성장애인이 하나의 계층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고전적인 적대적 관계설정 속에서 이번 대회의 중심이 여성이라는 계층에 머물러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IV.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

1.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법안이 있다. 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들이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여성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여성장애인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그런가 하면 여성 관련 법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 성폭력특별법 안에 “시설 수용된 여성장애인을 성폭력 할 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제도가 없다. 또한 아직 까지도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해서 그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 조차도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260만여명에 달하는 여성장애인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여성 관련법 혹은 장애인 관련 기본법 등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법·제도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고 사회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한국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장애인에 관한 편견의 심화

앞서 언급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 사회이념은 여성장애인에 관한 편견과 소외의 주범이다. 거기다가 경제개발만을 부르짖은 군사정권에 의해 오랜동안 통치되었던 한국사회는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낳은 '무형의 벽'이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장애인문제도 어려운데 왜 여성장애인문제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장애인단체,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여성장애인문제가 무엇이냐"고 오히려 힐난하듯 묻는 여성단체, 그리고 아직도 권리보다는 체념, 투쟁보다도 복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차별이라는 '무형의 벽'의 무게를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신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여성장애인 문제를 더욱 소외와 편견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한편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1995)을 마련하였다. 세추위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여성장애인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VI.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활동상황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 활동 보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장애인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지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못한다.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나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관해서 그 동안 정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이다. 2년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분과(빛장을 여는 사람들)를 설치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문제를 사회화하

기 시작했다. 빗장은 2년여의 과정을 거쳐 현재 빗장은 회원 50여명이 주 1회, 월 1회의 모임을 갖고 여성장애인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빗장은 한국여성 NGO위원회의 장애인 분과로 가입하였으며, 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 여성대회에 참여해 한국정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나이로비 전략의 국가 이행 사항 검토, 2000년 미래 전략 수립 등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빗장은 여성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알려내기 위해 여성장애인 수기 모음집 발간을 준비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가정과 여성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한국맹인여성회의 활동보고

1976년 1월 12일 12명의 맹인여성에 의해 발족된 한국맹인여성회는 회원확보와 기금조성을 위해 화장품 및 각종 생활필수품을 방문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1981년 두차례에 걸쳐 회원 자녀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처음에는 한국일보 주최로 다음에는 유관순 기념관에서 있었다.

1982년 6월 고대하던 사무실을 남산동에 매입하게 되었으나 이후 몇년간은 자금부족으로 침체일로를 걷다가 1992년 대폭적인 임원 개선과 함께 보다 폭넓은 회원 상호간의 간접 만남의 방법으로 '소리 여성'이라는 테잎을 회지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테잎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길잡이적 역할을 함은 물론 폭넓은 정보와 화제로 세태의 흐름을 읽게 하고 있다.

현재 150여명의 회원들을 위하여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예절교실, 메이크업 교실, 요리 교실, 불우이웃 돕기, 판매 및 바자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VII. 나오면서

여성장애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져 왔다.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 원인은 앞서 밝혔듯이 정부의 무관심과 여성단체의 의지 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무관심과 여성장애인의 권리의식 부족이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술과 전략을 마련하여 활동해야 한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

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0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문제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 각국가에 널리 알린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여성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법안에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안을 삽입하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정책 전달 기구들 내의 특별관심분야 전달기구를 두고 그곳에 여성장애인 분과를 두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제안한다.

넷째, 여성장애인의 권리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한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와 자질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등을 제안한다.

여섯째, 모든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별조치와 지원을 마련하며 학령기를 넘긴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일곱째, 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철폐하고,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인에서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시키고 특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정부기관 내에 두기를 강력히 제안한다.

여덟째, 여성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자가정의 복지증진, 각종 사회보장제도 확대실시를 요구한다.

아홉째,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주거 및 사회환경 개선을 제안한다.

열번째, 여성장애인문제의 해결은 여성문제 혹은 장애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당면과제로서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주도적인 노력과 여성단체 혹은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장애인 문제에 해결점을 시도 교류해야 한다. 이와같은 제안은 여성장애인을 문제를 단지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회복 운동으로 인식하고 추진돼야 하며 이는 곧 여성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이다.